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887
----------	-------

발의연월일 : 2026. 2. 19.

발 의 자 : 이만희 · 김기웅 · 김기현
서천호 · 구자근 · 김석기
이종배 · 조은희 · 이성권
강선영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친밀한 관계 내에서 주로 발생하며 강력범죄화될 위험이 높아 접근금지·유치 등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다만, 유사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피해자 보호 조치의 종류 및 범위, 기간과 위반 시 제재가 각기 달라 현장의 적극적인 법 집행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한 청구권을 검사에게만 부여하고 있어 신속하고 폭넓은 피해자 보호가 어려움.

이에 현행법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피해자 보호조치의 종류와 범위, 기간을 균일하게 규정하며, 사법경찰관에게 보호조치의 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조치를 더욱 두텁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사법경찰관이 모든 임시조치를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선행행위 위반 없이도 유치신청(또는 청구) 가능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8조의3).
- 나. 임시조치에 전자장치 부착을 신설하고, 법원에서 임시조치 변경 시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도 통지하도록 하며, 임시조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 임시조치 제5호의 기간은 2개월로 상향함(안 제29조).
- 다. 가정폭력행위자가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하고, 기존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함(안 제63조 및 제66조).
- 라. 가정폭력행위자가 임시조치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하고, 임시조치를 상습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형량을 상향함(안 제63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검사는”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으로, “제29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3호의 임시조치”를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임시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청구 또는 그 신청을”을 “청구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8조의3제1항 전단 중 “검사에게 제8조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신청받은 검사는 법원에”를 “법원에”로 한다.

제29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사와 피해자에게”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 검사와 피해자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2개월”을 “3개월”,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임시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를 “제5호의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임시조치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한다.

2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제6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

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 조치(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 제66조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제1항 및 제3항, 제8조의3제1항, 제29조제1항제2호의2,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 제6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가정폭력범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① <u>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3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u>	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① <u>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u> ----- ----- -----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임시조치----- -----.
② <u>검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제1항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된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5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u>	<u><삭 제></u>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u>청구</u>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 ----- ----- ----- <u>청구</u> ----- -----.
④ <u>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u>	<u><삭 제></u>

른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3(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
의 청구) ① 사법경찰관이 제8조
의2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8조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
고, 신청받은 검사는 법원에 임시
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청구는 긴급임시조치
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
구하여야 하며,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
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
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
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
조치를 할 수 있다.

1. 2. (생략)

<신 설>

제8조의3(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
의 청구) ① -----

-----법원에-----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임시조치) ① -----

1. 2. (현행과 같음)

2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3. ~ 6. (생략)

② (생략)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와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임시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는 두 차례만,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임시조치는 한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 ⑫ (생략)

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3.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관할 경찰관서의 장, 검사와 피해자에게-----
-----.

④ (현행과 같음)

⑤ -----
-----3개월-----
제5호의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임시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

⑥ ~ ⑫ (현행과 같음)

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①

하는 가정폭력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拘留)에 처한다.

1. 2. (생략)

<신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가정폭력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생략)

제66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의2제1

-----.

1. 2. (현행과 같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

② -----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③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현행과 같음)

제66조(과태료) -----

-----.

1. (현행과 같음)

<삭제>

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검사가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
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
니한 사람